

#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탈세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련 법령 위임사항과 서식을 정비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2조제1항)
- 나. 공무원 지급제한 대상 하향 조정: 국장→과장(안 제2조제5항)
- 다. 탈세제보 등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라. 지방세 탈세제보 등 신고서 신설(별지 제1호서식)
- 마. 포상금 지급신청서, 지급대장 정비(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 세정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4급 이상”을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2호”를 “제2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제2조제2항제1호”를 “제2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2항제4호”를 “제2조제3항제4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른”을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제보나 신고(이하“신고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고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input type="checkbox"/> 탈세 제보 <span style="float: right;">신고서</span> <input type="checkbox"/> 체납자 은닉재산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신고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제보)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년    월    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span>신고(제보)자</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div style="margin-top: 20px;">구미시장 귀하</div>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	건수	금 액 (원)			포상금 (원)
		본세	가산금	계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감면자료 제공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지난년도 채납액징수					
징 수 촉 탁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					
숨 은 세 원 발 굴					
<p>「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주 소)</p> <p style="text-align: center;">직급 (생년월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입금계좌</p> <p style="text-align: center;">구미시장 귀하</p>					
첨부	세부 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신분증 사본(일반인)				



[별지 제4호서식]

## 숨은 세원 발굴 등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제보자)		구분	세목	납기	징수액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 급 (주 소)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주소				

※ “구분”란에는 탈루세액, 은닉재산, 숨은세원, 미등기,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5호서식]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징수촉탁내역					채납자		징수촉탁수수료		지급일	포상금지급액	담당확인
직급	성명	구분	연도기분	과목(세목)	징수액	징수일자	주소	성명	받은일자	수령액			

-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를 표시



④ 구미시의 공무원중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3조(지급기준) <신설>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 4. (생략)

⑤ -----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  
-----  
-----.

1. 제2조제2항제1호-----
2. 제2조제2항제2호 -----

③ -----  
-----  
-----.

1. 제2조제3항제1호-----
2. ~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생략)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3. (생략)

<신설>

5. 제2조제3항제4호-----  
-----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 제3항제1호-----  
-----  
--.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제146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제보나 신고(이하“신고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 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제6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  
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  
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  
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환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  
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고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 등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  
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  
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  
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  
----- 별지 제2호서식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영 제43조-----  
-----  
-----

하여야 한다.

제10조 (생략)

-----.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

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  
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  
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  
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 체납처분비

-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 관 부 서		징 수 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연
	팀 장	장 현 주
	담 당 자	강 지 영 (480-6873)